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등 주요 개정사항 소개

2026.01.13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주요 개정사항 소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개정

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처분 등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게 함

01



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등
관련 공시 강화

02



합병 등에서의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

03



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 강화

'25.12.30부터 시행으로, 상장법인은
'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

출처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'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'(2025.12.23)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주요 개정사항 소개

주요 개정사항1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등 관련 공시 강화(1/2)

☑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

현행

-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%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공시

▶ 자기주식보고서(자기주식 보유현황,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포함)를 작성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

개정

-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2회 공시

▶ 자기주식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함

▶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
(6개월 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서술)

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
5% 이상 보유 시



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
1% 이상 보유 시

연 1회
공시



연 2회
공시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주요 개정사항 소개

주요 개정사항1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등 관련 공시 강화(2/2)

☑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

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기주식 취득·처분·소각계획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저해
↓	
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<u>30% 이상</u>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

☑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

-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, 증권발행제한, 과징금,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,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

☑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상대방 관련 공시 강화

- 시간외 대량매매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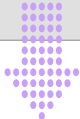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주요 개정사항 소개

주요 개정사항2

합병 등에서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

☑ 이사회 의견서 기재내용 등 구체화

<p>현행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합병 등¹⁾의 과정에서 다음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 공시 ▶ 목적, 기대효과,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,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• 하지만 이사회 논의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
<p>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함



이사회 의견서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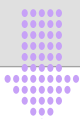
1) 합병,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·수도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분할, 분할합병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주요 개정사항 소개

주요 개정사항3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 강화

☑ 중대재해 발생사실 및 대응조치 공시항목 신설

<p>현행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정기공시(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)에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개되고, 발생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음
<p>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중대재해 발생개요, 피해상황,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의 공시도 의무화



이사회 체크포인트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회사의 장·단기 자기주식 처리 계획 및 이행 현황을 경영진과 논의하고 새로운 공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이사회가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 시 자기주식 보유현황,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이 타당한 지 검토 필요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시,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